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자구수정과 관직을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자구 수정(진흥을 위한 사업 또한 활동이나 →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)
- 관직 정리(문화관광국장 → 문화진흥국장)

첨 부

-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이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사업 또는 활동이나”를 “사업이나 활동 및”으로 한다.

제8조중 “문화관광국장”을 “문화진흥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조성관리,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사 업이나 활동 및 </p>	<p>제8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)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)..... 문화진 흥국장 </p>		